

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 수정
 -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6조”를 “제1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아동위원 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<u>제1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관계 법령

□ 아동복지법

제14조(아동위원)

- ①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둔다.
-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